

버) 징계의 감경(「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4조)

- (1)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.
  - (가) 「상훈법」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
  - (나) 「정부표창규정」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. 다만, 교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(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)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
  - (다) 「모범공무원규정」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
- (2) (1)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.
  - (가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
  - (나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
  - (다)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 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(訂正)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
  - (라)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(性)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
  - (마)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
  - (바) 학생에게 신체적 · 정신적 · 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
  - (사) 신규채용, 특별채용, 전직(轉職), 승진, 전보(轉補)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
  - (아)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
  - (자) 소속 기관 내의 (라)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
  - (차) (라)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(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, 피해자 권리 구제의 방해, 피해자에 대한 폭행 · 폭언,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
  - (카) 「공직선거법」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
  - (타) 「공직자윤리법」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 · 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
  - (파)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(제12호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
  - (하) 소극행정(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2조제2호 또는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  - (거)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
  - (너)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
  - (더)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